

農家金融의 行態와 構造分析 ——農家負債문제를 중심으로——

李 殷 雨·張 炳 翼

經 濟 學 科

(1986. 4. 28 접수)

〈要 約〉

이 논문은 우리나라 農家負債의 現況과 原因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현지조사는 울산근교의 100호의 標本農家를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조사결과를 1986년 1월 15일 현재 농가호당 부채는 1,88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農家負債의 原因은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原因은 國民經濟에서 農業部門의 역할을 등한시한채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日本農家負債의 現況, 原因 그리고 그 對策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A Study on the Financial Behaviors of Farm-household --with Emphasis on the Farm-household Debt--

Lee, Eun-Woo, Chang, Byung-Ik

Dept. of Economics

(Received April 28, 198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te and the causes of farm-household debt. On Jan. 15, 1986, the average debt of sample farm-household in the suburbs of Ulsan is 1,889 thousand won. The causes of these phenomena can be explained in respe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accentuating rural-urban disparities. And the experiences of Japan in 1930's have been surveyed in order to derive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debt problem.

I. 序 論

우리나라의 經濟는 1960년대 이후 外向的인 工業化를 중심으로 한 經濟開發政策에 힘입어 많은 구조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종래의 農業部門 중심에서 점차 製造業,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타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부문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있다. 즉 農家經濟가 관수후 폐쇄하게 되어 이것이 안정적인 國民經濟의 發展에 아주 큰 제약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農家負債狀態를 들 수 있다.

農家負債가 증가하는 것은 收入보다 支出이 많은데 인유한다. 먼저 收入面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이 研究는 大學研究費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소득원은 이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農家所得의 67%(1984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農業所得을 보면 生産基盤이 취약한데다 政府의 低穀價政策, 그리고 畜産物價格波動 등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農外所得도 현재 농촌에서는 농외소득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의 送金 및 補助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 農業經營費 상승, 教育費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農家の 支出은 꾸준한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현재 아주 낮은 수준의 消費生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수준이 營農費 및 家計費 支出을 충당하지 못하여 대다수의 농가들이 負債를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農家負債의 概況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蔚山근교에서 임의추출한 100호의 농가를 標本調査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농가의 부채상황 및 그와 관련된 세반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農家負債의 原因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國民經濟내에서 농업분제를 어떻게 묘야야 하는지, 또 이런 관점에서 농가부채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1930년대 日本의 사례를 고찰해 보고 제Ⅴ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Ⅱ. 農家負債의 實態

1. 調査概況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負債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標本農家를 선정하여 現地調査를 수행하였다. 標本農家는 慶南 蔚州郡의 3개면에서 무작위로 100戶의 農家를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는 5명의 調査員에 의해서 1986년 1월 16일~1월 21일까지 6일간 면담형취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내용중 소득 등 流量(flow)變數에 해당되는 것은 1985년 1년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았고, 부채현황 등 貯量(stock)變數에 해당되는 것은 1986년 1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농가 100戶중 耕種을 위주로 하는 一般農家는 86戶, 果樹農家는 4戶, 畜産農家는 6戶, 기타가 4戶이다. 물론 일반농가중에서도 대부분이 韓牛를 사육하고 있었고, 또 果樹農家와 畜産農家들도 대부분이 비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농가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방법은 어느 부분으로부터 가장 많은 收入을 얻는지에 따른 것이다. 기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農外所得이 그 所得源이 되는 가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대상 100戶를 耕地規模로 구분해 보면 0.5정보미만의 농가는 17戶, 0.5~1.0정보사이의 농가는 31戶, 1.0~2.0정보사이의 농가는 39戶, 그리고 2.0정보이상의 농가는 13戶이다. 여기서 耕地規模라 하는 것은 自家所有地에다 借入地를 더한 것이나 貸付地를 제외한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대상농가의 均당 평당경지면적은 1.13정보이며 이중 논이 0.82정보, 밭이 0.12정보, 기타가 0.19정보이다. 우리나라 농가의 均당평당경지면적(1984년)은 1.12정보, 이중 논이 0.69정보, 밭이 0.43정보인데 이와 같이 均당농가는 우리나라 전체평균에 비해서 논의 경지규모는 조금 크고 밭의 경지규모는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5정보미만 농가의 均당경지규모는 0.25정보, 0.5~1.0정보 사이의 농가의 均당경지규모는 0.68정보, 1.0

〈表 1〉 標本農家の 耕地規模 및 家口員數 現況(戶當平均)

구분	경지규모	병 균(합계)	0.5정보 미만	0.5~1.0 정보	1~2 정보	2정보 이상
경지규모(町步)		1.13	0.25	0.68	1.37	2.54
논		0.82	0.16	0.56	1.05	1.67
밭		0.12	0.08	0.06	0.13	0.27
기타		0.19	0.01	0.06	0.19	0.60
가구원수(人)		4.62	4.12	4.16	5.05	5.08
표본농가수(戶)		100	17	31	39	13

~2.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경지규모는 1.37정보, 2.0정보 이상 농가의 평균경지규모는 2.54정보로 나타났다. 또 戶當平均家口員數는 4.62인인데 이중 0.5정보 미만 농가의 평균가구원수는 4.12人 0.5~1.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가구원수는 4.16인, 1.0~2.0정보 사이의 농가의 평균가구원수는 5.05人, 2정보 이상 농가의 평균가구원수는 5.08人이었다.

2. 農家の 借入狀況

標本農家の 1985년 1년간 所得狀況과 1986년 1월 15일 현재의 負債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表 2>이다. 標本農家の 1985년 1년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300千원인데 이중 農業所得이 2,988千원으로 69.7%를 차지하고 農外所得이 1,302千원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農家負債는 戶당평균이 1,889千원으로 나타났다. 政府의 발표에 의하면 1985년도의 戶當平均農家所得은 5,743千원이고 戶當平均負債는 2,071千원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인구의 조사결과와 정부의 조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표본설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정한 本標農家에는 0.1정보 미만의 耕作農家와 無耕地農家, 그리고 農業勞動者家口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農家中에서도 中農, 大農 위주로 표본이 실제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0.5정보 미만의 농가는 30.8%이나(1984년)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농가 중에서 0.5정보 미만의 농가는 18.4%이고, 또 전체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2.0정보 이상인 농가는 5.5%이나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농가 중에서 2.0정보 이상의 농가는 10.2%이다. 이렇게 농가경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설계가 상향편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호당소득과 정부조사의 호당소득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호당부채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조사는 1985年度末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본 연구는 1986年度初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조사의 조사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所得 중에서 農業所得은 耕地規模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農外所得은 경지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수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경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업이외의 부문에 취업해야 할 기회가 많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비농업부문에서 소득을 증대시켜야만 하는 것에 기인한다. 반면에 個別農家の 平均負債額은 耕地規模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年間所得에 대한 負債의 비율은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는 30%내외이나 0.5정보 미만의 경우는 56.1%로 나타나 그만큼 소농이 부채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標本農家 100戶 중에서 負債를 갖고 있는 농가는 74戶로서 借入農家比率은 74%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0.5정보 미만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 17戶 중에서 11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0.5~1.0정보 사이의 규모의 농가는 31戶 중에서 21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다. 또 1.0~2.0정보 사이의 규모의 농가는 39戶 중에서 35戶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2.0정보 이상의 규모의 농가는 13戶 중에서 9戶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農家の 借入行態 중에서 借入處를 묻기때 고된 전체를 평균한 경우 借入金額의 47.2%가 農協單位組습에 기인한 것이고, 49.6%가 이웃의 農家나 都市의 親知에게서 빌린 私債이고 나머지 3.2%가 기타의 경우이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農家の 借入處는 농협단위조합과 사채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表 2> 標本農家の 所得 및 負債狀況

(단위 : 천원)

소득및부채	경지규모	경지규모				
		병	관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소	농	4,300	3,144	3,319	4,933	6,251
농	입	2,998	1,355	2,113	3,687	5,192
농	외	1,302	1,789	1,206	1,246	1,057
부	채	1,889	1,764	2,030	1,835	1,877

〈表 3〉 借入處別 平均借入額

(단위: 천원), ()안은 비율

키입처	경지규모	평	균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2.0정보 이상				
농업	타위 조합	892.1	(47.2)	1,157.6	(65.6)	907.4	(44.7)	935.9	(51.0)	376.9	(20.0)
사	채(농가)	793.0	(42.0)	605.9	(34.4)	996.8	(49.1)	476.9	(26.0)	1,500.0	(80.0)
사	채(도시외권지)	144.0	(7.6)	0		0		369.2	(20.1)	0	
기	타	59.6	(3.2)	0		125.8	(6.2)	52.8	(2.9)	0	
계		1,888.7	(100.0)	1,763.5	(100.0)	2,030.0	(100.0)	1,834.8	(100.0)	1,876.9	(100.0)

이외의 농협규모조합, 축협, 시중은행, 마운금고 등에서 차입을 한 경우와 사채 중에서 전부사채입자 등에서 차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규모별로 借入處를 분석해 보면 0.5정보 미만의 경지규모의 농가는 상대적으로 농협단위조합으로부터의 借入比率이 높고 私債의 借入比率이 낮은 반면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의 농가는 농협단위조합으로부터의 차입비율이 낮은 반면 私債의 차입비율이 높다. 그러나 0.5~1.0정보, 1.0~2.0정보 사이의 농가는 또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耕地規模와 借入處와의 관계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借入金의 用途別 使用處를 나타내는 것은 〈表 4〉이다. 〈表 4〉는 農家借入金의 支出項目을 資本的支出, 農業經營費, 消費的支出, 教育費, 그리고 其他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 축사, 창고의 증축 또는 개량, 그리고 농기계 구입을 포함하는 資本的支出은 전체 借入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밖에 되지않고, 특수식물재배, 축산자금, 의료, 농약대금 등 農業經營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 그리고 의료비, 관공감제비, 내구소비재구입, 생활비 등을 포함하는 消費的支出이 전체 農家借入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9%, 그리고 教育費支出이 농가차입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0.5정보 미만 경지규모의 농가는 차입금 중에서 消費的支出이 제일 많으나 2.0정보 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農家は 教育費支出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986년 1월 15일 현재 농가의 借入金 중에서 資本的支出과 農業經營費에 대한 支出이 상대적으로 작고 消費的支出과 教育費에 대한 支出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농업경영비의 지분지출에 대한 차입금은 당해연도말까지 대부분 상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업경영비 등에 내린 차입금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기술에 糧食을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의 農家戶當平均 1,889천원의 負債는 대부분이 農業所得밖으로는 징취하기 어렵고 또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농가부채간액 중 消費的支出과 教育費支出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농가소득수준이 基本的인 消費支出과 子女의 教育費를 부담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나고 할 수 있다.

또 현재 이렇게 負債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質問에 대해 〈表 5〉의 같은 결과관 얻었다. 〈表 5〉의 조사방법은 개별농가에게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로서 두가지를 지적해 하

〈表 4〉 用途別 農家借入金

(단위: 천원), ()안은 비율

용도	경지규모	평	균	0.5정보 미만	0.5~1.0정보	1.0~2.0정보	2.0정보 이상				
자	본적 지출	134.3	(7.1)	176.5	(10.0)	110.6	(5.4)	105.1	(5.7)	223.0	(11.9)
농	업 경영비	384.4	(20.3)	269.4	(15.3)	348.4	(17.2)	545.1	(29.7)	138.5	(7.3)
소	비적 지출	545.0	(28.9)	652.9	(37.0)	609.7	(30.0)	602.6	(32.8)	76.9	(4.1)
교	육비	619.0	(32.8)	252.9	(14.3)	941.9	(46.4)	248.7	(13.6)	1,438.5	(76.7)
기	타	206.0	(10.9)	411.8	(23.4)	19.4	(1.0)	333.3	(18.2)	0	
계		1,888.7	(100.0)	1,763.5	(100.0)	2,030.0	(100.0)	1,834.8	(100.0)	1,876.9	(100.0)

〈表 5〉 負債增加의 理由

		()안은 비율
項	目	度 數
주곡, 하곡의 정부수매가격이 지나치게 낮음		44.5(29.7)
채소, 과일 등의 가격불인정		9.0(6.0)
소값 파동		39.0(26.0)
농업 기계화의 확대		5.5(3.7)
교육비의 증가		23.5(15.7)
의료보험의 미실시		4.0(2.7)
관혼상제비의 피다		7.0(4.6)
높은 소비수준		2.5(1.7)
농업 경영비의 상승		10.0(6.6)
기	나	5.0(3.5)
계		150.0(100.0)

고 그중 1순위는 가중치를 1로 주고, 2순위는 가중치를 0.5로 주어 그 度數를 구하였다. 이 〈表 5〉에서 보면 최근에 농촌에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농가들이 들고 있는 것은 첫째로 주곡, 하곡의 政府收買價格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다음으로 소값파동 등이다. 이것은 농민들이 자기의 生産活動에 대하여 정당한 報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농가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農家負債의 增加要因으로 교육비 증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교육열이 종전에 비하여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비료, 농약 등 농업경영비의 상승은 부채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6.6%로 나타냈다. 한편 채소, 과일 등의 價格不安定에 그 원인을 돌리는 사람은 6.0%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도시내각지역에 과일, 채소 등의 專業農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또 一般農家중에서도 과일, 채소로부터의 所得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 그 반면 농업기계화, 의료비, 관혼상제비, 높은 소비수준에 농가부채의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負債의 償還

負債의 償還이란 기존의 부채를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農家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償還能力이 充分하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負債의 償還方法으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農家所得으로 상환하는 方法, 農家の 財産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新規借入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농가의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농가의 재산은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新規借入에 의해서 負債는 상환한다는 것도 새로운 부채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負債償還方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農家の 負債는 農家所得 즉 農業所得이나 農外所得에 의해서 상환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정도의 소득수준의 농가들이 많아 현상대에서의 농가의 부채상환분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 근거하여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하여 質問을 한 결과 그 응답은 〈表 6〉과 같이 나타났다. 〈表 6〉에서 보듯이 標本農家 100戶 중 현재 負債가 없는 농가가 24戶,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11戶, “힘들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농가가 44戶, “재정이라도 지원하여 갚을 계획이다”의 경우가 16戶,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5戶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5戶 중 4戶는 0.5정보 미만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인데 이것은 영세농의 부채상환능력이 보다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나머지의 경우는 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응답이 경지규모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규모의 농가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퍼져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耕地規模에 따른 농가분

〈表 6〉 負債의 償還能力

(단위: 戶)

구분	경제규모	0.5 정 비 만	0.5~1.0 정 보	1.0~2.0 정 보	2.0 정 보 상	계
부채가 없다.		6	10	4	4	24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갚을 수 있다.		2	2	4	3	11
힘들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5	13	22	4	44
재식이라도 치부하여야 갚을 수 있다.		0	6	8	2	16
아무런 대책이 없다.		4	0	1	0	5
계		17	31	39	13	100

료가 반드시 農家所得과 일치하지 않고 또 각 가구마다 家族構成에 따라 가계비소액이 다른데 기인한다.

한편 이런 農家負債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의 질문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는 100戶 중 70戶이었으며, “부채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대답한 농가는 26戶였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농가가 4戶였다. 또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表 7〉과 같다. 이것에서 보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70戶의 농가 중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는 28戶,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 및 원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농가는 22戶로 나타났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農家들은 負債問題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광범위한 정부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농가들이 부채의 원인이 어느정도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表 7〉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종류

(단위: 戶), ()인은 %

項 目	度 數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상환유예	9(12.9)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감면	28(40.0)
빚진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자 및 원금감면	22(31.4)
영세농에 대해서만 상환유예	4(5.7)
영세농에 대해서만 이자감면	4(5.7)
영세농에 대해서만 이자 및 원금감면	1(1.4)
기 타	2(2.9)
계	70(100.0)

4. 農家の 資金實態

이렇게 많은 農家들이 負債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營農資金의 운용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영농자금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의 질문에 標本農家 100戶 중 “대단히 부족하였다”가 17戶, “조금 부족하였다”가 50戶, “부족하지 않았다”가 32戶였다. 또 “만약 농협에서 단기영농자금을 대부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 “가능한 한 많이 대부받겠다”고 대답한 가구가 22戶, “소액만 대부받겠다”고 대답한 가구가 61戶, “대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16戶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農家の 營農資金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農家の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서 負債가 증가하고 있으나 營農資金의 운용실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表 9〉에서 영농자금을 대부받겠다고 대답한 83戶 중에서 만약 “영농자금을 대부받으면 어느 용

〈表 8〉 營農資金의 狀態

(단위 : 戶)	
項 目	度 數
매단히 부족하였다.	17
조금 부족하였다.	50
부족하지 않았다.	32
무 응 답	1
계	100

〈表 9〉 단기 영농자금의 필요 여부

(단위 : 戶)	
項 目	度 數
가능한 한 많이 내부받겠다.	22
소액만 내부받겠다.	61
내부 받을 필요가 없다.	16
무 응 답	1
계	100

도에 사용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질곡는 〈表 10〉과 같다. 비료, 농약 등 농업경영비에 사용하겠다는 농가가 41戶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농가가 13戶, 교육비가 12戶이었다.

또 만약 “모름 이내로 돈 100만원이 필요하더라면 이니로부터 차입하겠느냐?”는 질문에 標本農家 100戶 중 農協으로부터 차입하겠다고 대답한 농가가 63戶, 私債를 차입하겠다고 대답한 농가는 37戶이었다. 또 “이 경우 借入可能限은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가 35戶, “가능하지만 힘들다”가 62戶, “불가능하다”가 3戶로 나타났다. 이 설곡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농촌의 사금융급원은 농협의 자금과 사채가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농가들은 농협의 사금에 보다 많이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가 차입해 쓰고 있는 자금의 이자율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자금의 경우 연 13.5%이며 私債의 경우 연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농협단위조합의 대출자금의 이자율이 일반은행의 대출자금의 이자율보다 연 2.0% 정도가 높다. 그리고 私債의 利率은 수년전만 하더라도 月 3%, 年 36%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기 불가안정과 더불어 月 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私債의 利率水準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강히 높다”가 8戶, “조금 높다”가 55戶, “걱정하다”가 34戶로 나타났다. 한편 農協單位組合의 貸出利率水準에 대해서는 “평강히 높다”가 25戶, “조금 높다”가 46戶, “걱정하다”가 25戶로 나타났다. “평강히 높다”의 “조금 높다”라고 대답한

〈表 10〉 대부 받은 자금의 사용 희망처

(단위 : 戶)	
項 目	度 數
비료, 농약 등 농업 경영비	41
축산 자금	13
교육비	12
주택, 특가, 광고의 증축 또는 개량	6
생활비	5
기 타	6
계	83

〈表 12〉 私債利率水準

(단위 : 戶)	
項 目	度 數
평강히 높다.	8
조금 높다.	55
걱정하다.	34
보르겠다.	3
계	100

〈表 11〉 資金의 借入可能性

(단위 : 戶)	
項 目	度 數
충분히 가능하다.	35
가능하지만 힘들다.	62
불가능하다.	3
계	100

〈表 13〉 農協貸出 利率水準

(단위 : 戶)	
項 目	度 數
평강히 높다.	25
조금 높다.	46
걱정하다.	25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2
보르겠다.	2
계	100

농기수준 보편 私債 利率에 내해서는 63戶가 그렇게 대납을 했으나 農協 貸出利率에 내해서는 71戶가 그렇게 대납을 했다. 실질적으로 농협의 대출이자율이 사채 이자율보다는 훨씬 낮으나 농협의 대출이자율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高利貸 성격을 띤 사채의 이자율이 최근에 조금 하락했으나 公的인 성격은 띤 농협의 대출이자율은 단기인성과 더불어 심질서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이자율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Ⅲ. 農家負債의 原因(一瞥覽)

현재 우리나라의 農家의 負債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農家所得이 낮아져서 때문이다.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농기수준은 農產物 產出과 農產物 價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농기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농산물 생산량이 작거나, 농산물 가격이 낮거나, 농기소득수준이 낮거나, 또는 이들 3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농기의 소득수준이 낮아 負債가 증가하는 이유로 농기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사실, 즉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아지는 사실과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기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계획하고자 한다. 또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政府의 低農產物價格政策과 무분별한 農產物輸入의 擴大 등 2가지에만 논의할 국한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農業은 한마디로 小農經營이라고 할 수 있다. 小農經營이란 農民이 스스로 土地를 점유하고 또 고립된 노동자로서 자신의 생활수단을 자급과 잔여 생산하기 않으면 되는 생계양식이다. 이 小農經營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勞動力과 土地와 기타 生產手段이 직접 결합되어 있고, 또 生產手段의 소유가 생산능력에 의한 私的所有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농경영은 고립분신기이며 그 소농은 사회적으로 비분화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小農經營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농업생산이 농민의 각기각 생활을 위해 수행되기 때문에 經營과 生活이 비분리상태에 있게 되고 經營目標보다 많은 소농의 복지가 된다는 점이다. 즉 소농경영에서는 농민은 經營者이면서 資本家이면서 동시에 勞動者이기 때문에 이들은 農業所得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기만 하면 경영은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小農經營에서는 農業資本家처럼 平均利潤을 권으로 하지도 않고 地主의 같이 地代를 복으로 하지도 않는다. 물론 농민에게도 生活에 필요한 部分을 초과하는 잉여가 보나 많이 잉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最低生活이 가능하면 농업을 계속하게 된다. 이리하여 농민은 농업소농이 아주 낮은 수준이 되어도 농업생산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小農經營이 지배적인 資本主義國家에서 농민의 손에 들어오는 農產物의 價格은 극히 저렴한 것이 되고 그 결과 小農民은 전진 압박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¹⁾

일반적으로 農業部門에서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이 지배적인 경우 農產物價格은 $C(\text{不變資本}) + V(\text{可變資本}) + \text{地代} + \text{利潤}$ 의 水準에서 결정된다. 小農體制하에서는 最劣等地的 費用價格($C+V$)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小農經營의 경우 사선이 資本을 가지고 있고 또 土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資本의 平均利潤과 地代가 수취되지 않더라도 불변자본비용(C)에다 자가노임비용(V)만 취득될 수 있으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이다.⁽²⁾

우리나라의 農產物價格水準이 낮아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기들은 대부분 小農이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수준이 地代와 平均利潤을 따르자면 민간의 총부하 높은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농업생산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수준이 낮은 이유로서 여러가지들 들 수 있겠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여기서는 政府의 低農產物價格政策과 農產物輸入의 확대 등 2가지에만 국한시켜 논의할 신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부의 지동산물 가격정책의 대표자인 例로 米穀의 政府收買價格을 높이므로써 상부의 일사에서는 현재의 인경부수매가격수준이 쌀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하고도 농가에게 인경공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이라

(1) 梅川勉 외(1983), pp.144~147.

(2) 梅川勉 외(1983), pp.106~100.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의 생산산비 통제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현재의 쌀수매가격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즉 쌀생산비용 勞力費를 製造業勤勞者勞賃으로 대체하고 85% 수준의 限界農家の 生産費를 기준으로 한 경우 현재의 쌀政府收買價格수준은 겨우 費用價格(C+V)의 수준에 와있을 뿐이고 優等地 또는 평년면적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에 있어지는 萌芽的 利潤은 성립시킬 수 있으나 이 萌芽的 利潤도 地代로 흡수되어 버리고 資本蓄積을 위한 利潤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³⁾ 즉 일가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高米價政策은 시행하고 있다는 논리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분석해 보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農業收入의 약 절반정도가 米穀으로부터 얻는 收入인데 정부가 계속 쌀수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결과 농가소득 수준이 하락한 것이 농가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될 수 있다.

農産物價格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農産物輸入의 확대에 있다. 우리나라의 外國農産物의 도입은 休戰後 「P.L. 480」에 의한 미국의 剩餘農産物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후 꾸준한 농산물수입은 국내의 생산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食糧自給度를 갈수록 저하시켰다. 식량중 곡물의 자급도만 보면 1965년도 93.9%이던 것이 1975년에 73.0%, 그리고 1984년에는 48.9%로 낮아졌다. 이제 밀과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농산물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22억달러(1984년)정도이나.

이처럼 農産物輸入이 계속된 것은 比較優位論의 입장에서 외국의 값싼 農産物을 수입해서 식료품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그 주 내용이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것은 각 國家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 교역국 쌍방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비교우위론에는 몇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그 조건들은 ① 勞動價論이 성립하고 또 양국간의 不等價交換이 없을 것 ② 수급체감법칙이 자동하지 않을 것 ③ 資源의 완전고용 ④ 國際收支의 均衡 ⑤ 資源의 完全移動性 등이 성립해야 하는 것이다.⁽⁴⁾ 이런 신제조건위에서면 비교우위론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그대로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都市이나 農村에나 많은 潛在失業이 존재하고 있고 농촌의 노동력중 壯年層과 老年層은 포기할 경우 직접적으로 轉職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농지도 농업은 포기할 경우 티용도로의 전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것을 실증하는 예로 농산물 수입이 증기된 결과 많은 농가들이 유향화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1976년도의 우리나라 耕地利用率이 141.8%이던 것이 1984년에는 124.9%로 하락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내고 있다. 또 國際收支面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貿易收支는 계속 赤字였다.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보더라도 비교우위론을 우리나라의 농업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많은 農産物輸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부

〈表 14〉 穀物の 自給度 變化

연도	구분	식제곡물	쌀	고리쌀	밀	옥수수	콩	기	나
19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970		80.5	93.1	106.3	16.4	18.9	86.1		96.9
19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980		56.0	95.1	57.6	4.8	5.9	35.1		89.8
1982		53.0	93.7	85.9	3.4	4.9	32.4		22.5
1984		48.9	97.8	131.8	0.8	3.1	24.0		10.1

資料 : 농수산부, 「農政主要指標」, 1985.

(3) 黃延秀(1983), pp.124~126.

(4) Robinson, J., (1981), pp.102~104.

품목의 농산물 가격은 폭락시세를 빚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農家負債를 증가시킨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農家負債의 증가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공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업부분에의 투자를 너무 등한시켰다는 사실이다.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農業部門의 役割은 여러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었다. 自由放任과 自由貿易을 주장한 古典學派 經濟學者들도 국민경제내에서의 농업부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농업의 발전은 도시의 제조업의 발전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Smit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生活資料는 본질적으로 생각컨대 便宜品과 奢侈品에 앞서는 것이므로 前者를 조달하는 산업은 반드시 後者に 공헌하는 산업에 앞서는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생환자료를 제공하는 시골의 耕作과 改良이 반드시 편의품과 사치품의 수단을 공급하는 도시의 확대에 선행하여야 한다. 시골의 剩餘生産物만이 즉 경작자의 생환유지 이상의 것만이 도시의 생환자료를 구성하며 도시는 이 잉여생 산물의 증가와 더불어서만이 확대될 수 있다.”⁽⁵⁾

“따라서 사물의 자연적 전개과정에 따르던 모든 발전적인 사회의 대부분의 자본은 첫째 農業, 그 다음이 製造業, 그리고 마지막으로 外國貿易에 돌버린다. 임의 이런 순서는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므로 영토를 기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선 어느 정도 관철되어 왔던 사형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外向的인 工業化論이 우세하여 農業部門에 대한 財政投融資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였다. <表 15>는 第一次經濟開發計劃期間부터 第四次經濟計劃期間까지의 財政投融資資金의 産業別配分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지원부분에서 農林業部門을 보면 전대금액은 증가해 왔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즉 농업지원부분이 전체 財政投融資資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1차계획기간 동안에는 23.1%였으나 제 4차계획기간 동안에는 13.9%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 이후 경제개발운동에서 農業部門의 개발을 등한시하였다는 면적인 例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農業部門의 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에 농업부분의 생환기반이 취약하게 되고 그 결과 農家所積의 低下, 農家負債의 增大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表 15> 財政投融資 資金의 産業別 配分(1975年 不變價格)

(단위 : 億원, %)

項 目	제 1 차 계획기간		제 2 차 계획기간		제 3 차 계획기간		제 4 차 계획기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産業支援 部門	4,603	48.7	7,916	39.0	15,418	45.9	23,680	38.7
그중 農林業	2,181	23.1	4,424	21.8	6,919	20.9	8,270	13.9
産業基盤造成 部門	4,271	45.2	8,477	41.8	11,693	35.4	21,675	36.4
社會基盤造成 部門	344	3.6	3,173	15.7	3,781	11.5	10,316	17.3
其 他	237	2.5	707	3.5	2,406	7.3	4,020	6.6
합 計	9,456	100.0	20,273	100.0	33,028	100.0	59,691	100.0

資料 : 柳漢成(1983), p.500에서 재가산.

Ⅳ. 1930年代 日本의 事例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家の 負債問題를 日本도 1930年代에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 章에서는 1930年代 日本의 農家負債의 原因과 現況 그리고 그에 대한 對策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하여 약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5) Smith, A. (1983), p.377.

(6) Smith, A. (1983), p.380.

1929年 10月 美國 뉴욕의 월(Wall)街에서 일어난 株式價格의 暴落에서 비롯된 恐慌은 全 世界에 波及되어 이미 同年末에 일본에도 影響을 미치기 시작하여 日本經濟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 恐慌은 일본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에 甚한 타격을 주어 農業恐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表 16>은 농업공황으로 인한 農産物 價格하락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 농가의 가장 주요한 부업원이던 누에는 1929年에서 1931年 2年동안 그 價格이 1/3수준으로 하락했고 기타 農産物 價格도 그 하락폭이 매우 큰 것이었다. 이렇게 農産物價格은 폭락하였는데 反하여 農家가 購入하는 農業生産資材價格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또 非農業部門도 不황이 있기 때문에 農業外 僱傭機會가 감소하여 農外所得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農家가 구입하는 消費財價格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租稅와 實質消費도 慣性的 性格을 가지고 있어서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았다.

<表 16> 1930년대 農業恐慌時 農産物 價格下落 現況 (단위 : 円)

	1929年	1930年	1931年
누 애(畝種一貫)	8.0	4.00	2.87
쌀 (一石)	29.84	18.23	18.71
보 리(一石)	10.58	3.18	6.33
밀 (一石)	18.44	5.74	6.82
고구마(一貫)	0.31	0.16	0.16
감 자(一貫)	0.35	0.10	0.13
오 이(1상저)	1.32	0.54	0.46

資料 : 安藤良雄(1963), p. 165.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농가경제가 매우 악화되고 負債가 증가하게 되었다. <表 17>은 1933년도의 日本 農家의 所得과 負債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1933년도의 일본 농가의 平均所得은 726.08円이 있으며 平均負債는 660.35円이 었다. 농가전체의 부채는 1929年末에는 45億円, 1932年末에는 55億円에 달할 정도였다. 또 부채의 내용을 보면 農家負債의 원인이 農業經營上의 이유 즉 차입자금이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기인한 기 보다는, 소미적인 목적에 기인한 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表 17> 1933년 日本의 農家所得과 負債現況

(단위 : 円)

	自作農	自小作農	小作農	二者平均
農業所得	666.75	572.23	455.42	564.80
兼業所得	125.84	114.05	121.30	120.40
家事收入	45.56	37.05	40.01	40.88
所得合計	838.15	723.33	616.73	726.08
農業用負債	352.25	392.78	221.92	322.31
兼業用負債	11.90	5.47	0.08	5.82
家事用負債	358.08	362.61	275.96	332.22
負債合計	722.23	760.86	497.96	660.35

資料 : 河田嗣郎, 碓 正夫(1979) p. 350.

한편 福岡縣 農會가 1933년 3월~34년 2월까지의 1년간 標本農家를 대상으로 農家의 收入과 支出現況을 조사한 結果가 <表 1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特別支出이라는 것은 외성款, 借入會返濟 등은 나타내 는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가계미지출이 261円인데 比하여 부채이자가 112円, 특별지출이 176円이었던 데 이 사실에서 농가에 대하여 부채의 압박이 매우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18〉 日本 農家の 收入—支出 現況((1932~33년)

(단위 : 円)

收 入		支 出	
농·업 수입	591.35	농·업 지·출	189.72
검·업 수입	37.77	가·계 비	261.26
기·타 수입	65.03	건·업 지·출	0.45
낙·벌 수입	71.28	조·세 부·담	24.41
		부·채 이·자	112.39
		특·별 지·출	176.36
계	765.43	계	764.59

資料 : 河田嗣郎, 俗 正夫(1979), p. 352.

이런 農家負債의 利率率은 나타내는 것이 〈表 19〉이나, 이 表에서 보면 利率이 원 12%이상의 高利貸는 약 28.5% 밖에 되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물리하고 채무자가 유리하나 이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의 시기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表 19〉 1932 年 日本 農家負債의 利率率別 構成

(단위 : 100萬円, %)

	7% 미 만	7 ~ 10%	10 ~ 12%	12 ~ 15%	15 %	계
金 額	411	1,386	1,198	930	260	4,185
構 成 比	9.8	33.1	28.6	22.2	6.3	100.0

사료 : 加藤 謙(1983), p. 167

이런 農家負債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어나가지 경제인들이 시행되었다.⁽⁷⁾ 여러 정책중에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時局救濟土木事業이다. 이것은 1932년부터 3년간 내무성, 농림성을 중심으로 土木事業을 農村中心으로 행하여 農民의 現金收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즉 農民과 失業者를 고용하여 그들의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有効需要를 증대시켜 不況으로 부터 탈출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였다. 1932-34年 3년간 여기에 소요된 經費는 中央財政負擔이 5.4억円, 地方財政負擔이 2.9억円 計 9.3억円이었다. 또 이 經費는 內務省所管과 農林省所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內務省所管은 道路改修, 中小河川改良, 砂防事業 및 항만의 改修가 주내용이었다. 한편 農林省所管分은 開墾, 土地改良 및 農業水利施設 등 農業土木事業이 그 주내용이었다. 이 사업은 당시 현금수입이 부족하던 농가에게는 농한기의 현금수입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채부담을 원회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農村의 經濟更生運動이 전개되었나. 이 운동의 자 町村에게 經濟更生計劃은 수립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였다. 그 계획의 내용은 農業經營의 多角化, 自給度の 向上, 共同購買, 販賣 體制의 整頓, 부채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운동은 농가에게 불황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불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이 외에도 自力更生的인 精神運動의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經濟更生運動은 産業組合, 農會, 市町村, 행정기관 및 學校 등에 의해서 공동으로 추진되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産業組合이다. 産業組合은 당초 小作農, 零細農家에게 對人信用으로 단기인정자금의 내부를 목적으로 信用組合을 설립하기는 취지에서 제출된 信用組合法을 발전시켜 信用組合 이외에 販賣, 購買, 生産組合까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産業組合法에 의해서 설립된 여러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1935년 이 「産業組合法」이 개정되고 1936년에 産組擴充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7) 加藤 謙(1983), pp. 168~175.

계획의 내용은 조합이 설치되기 않은 町村의 派出所, 全農家の 組織化, 全組合의 4種(信用, 販賣, 購買, 利用) 兼營組合化, 購販事業의 擴張, 그리고 系統利用率의 向上 등 이었다. 그 결과 産業組合의 組織은 增進해가고 事業은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財政資金의 融通인데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大藏省預金部資金의 低利供給이다. 즉 大藏省預金部資金을 耕地整理組合, 産業組合 등을 통하여 농가들에게 低利로 貸付하여 低利負債를 정리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1935년말의 차입잔고만 보면 耕地整理組合이 120百萬円, 産業組合이 104百萬円, 그리고 地方公共團體가 55百萬円 등이었다. 특히 産業組合의 경우 당시 상당할 정도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低利의 財政資金의 融通은 農業恐慌의 피해를 고고 있던 농가에게는 經濟更生運動 및 産組擴張 5개년계획과 關連하여 큰 意義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農家負債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가지 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여기서 농가부채 정리의 지극히 關連된 것으로는 「農家負債整理組合法」이 있다. 이 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集落單位별로 負債整理組合을 조직시킨다. ② 이 부채정리조합은 組合員의 債務條件緩和 즉 元利息의 減免, 借入期限의 長期化, 利率引下 등을 주선하고, 조합원에게 經濟更生計劃, 負債償還計劃을 수립토록 하여 그 계획의 이행은 積極한 조합원에게는 一千円한도의 부채정리자금을 내부한다. ③ 市町村은 預金部資金을 財源으로 하여 부채정리조합에 대하여 총액 2億圓을 한도로 특별용동을 행하여 부채정리의 圓滑化를 꾀한다. ④ 이 용동에 의해서 市町村이 손실을 본 경우에 市町村의 融자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府縣이 市町村에서 손실보상을 하고 國家는 府縣에게 보상의 半額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당시의 부채액은 46億圓 내지 55億圓이었는데 총액 2億圓으로 융지를 한다는 것은 經濟更生運動과 같이 政令운동의 측면이 강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의해서 설립된 부채정리조합의 수는 1937年 7月の 경우 5,916개이었으나 실제로는 수 십이 부족하여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25百萬圓에 불과하였다.

1937년에는 이법을 개정하고 또 「農村負債整理資金特別融通及損失補償法」이 제정되어 농가부채정리가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용동을 하는 기관을 市町村이외에 産業組合中央金庫의 特殊銀行들을 포함시킨다. ② 信用組合은 동해서도 부채정리조합에 融通하게 한다. ③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액은 인정시킨다.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부채정리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데 1942年말의 경우를 보면 설립된 負債整理組合數가 10,585개, 융자결정액은 70.8百萬圓이었다. 농가부채정리사업은 1939年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전지하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農家收入의 증대와 7-입하는 物價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가의 지출이 증가하여 자기자본에 의한 부채정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V. 結 論

이제까지 현재의 우리나라의 農家負債의 行態와 그 原因, 그리고 1930年代 日本의 사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1986년도 農家농가의 1인당 평균부채액은 1,889千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 농가의 소득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차입 당시 대부분이 소비지출 및 教育費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것에서 보듯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기본적인 소비지출과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農家負債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本稿에서는 政府의 低農物價格政策, 農産物輸入의 膨大, 그리고 農業部門에의 투기부진이 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고 1930년대의 日本의 農家負債도 고찰해 보았다. 일본의 農家負債는 農業恐慌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이 주원인 이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면, 금융적인 면, 국민정신운동의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農村問題가 대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民經濟내에서 農業部門을 바라보는 근본기각부터 고쳐서야 될 것이다.

參考文獻 및 資料

1.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 1985.
2. 농수산부, 「농림통계연고」, 1985.
3. 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金融」, 1984.
4. 柳漢成, “韓國經濟發展과 財政投融資,”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년도)」, 韓國開發研究院, 1983, pp. 437~514.
5. 孫桂統, “韓國의 經濟發展과 均衡發展의 問題(1) - 農工間 均等問題를 중심으로,” 「經濟學研究」 제32집 韓國經濟學會, 1984년 12월, pp. 257~284.
6. 이우재, “농가부채 실태와 그 문제점,” 「한국농업분제의 새로운 인식」, 문배계, 1984.
7. 李貞煥, 丁安聲, 「農業金融制度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6, 1980.
8. 李賢宰外, 「韓國의 民間貯蓄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79.
9. 黃延秀, 「米穀生産費와 米價水準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10. 加藤謙, 「農業金融論」, 明文書房, 1983.
11. 梅川勉外(申大燮역), 「농업경제학개론」, 청사, 1983.
12. 玄藤良和, 「現代日本經濟史」, 日本評論社, 1963.
13. 川上正道, 上原信博, 「農業政策論」, 有斐閣, 1980.
14. 河田刷郎, 俗止夫, 「農家負債とその整理」(覆刻版), 昭和前期農政經濟名著集 15, 農山漁村文化協會, 1979.
15. Janvry, Alain de,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tin Ame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16. Robinson, Joan, 「Aspect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7. Smith, Adam(佐千煥역), 「國富論」, 乙酉文化社, 1983.